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7976호, 2021.3.23. 공포. 2021.9.24 시행)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,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(제21조의8 신설)

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,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함

### 나. 유가보조금, 천연가스 연료보조금,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기준 등 마련 (제21조의5, 제21조의7, 제21조의9 신설)

유가보조금, 천연가스 연료보조금,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, 보조금 지급액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

### 다. 보조금 지급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범위(제21조의10 신설)

지방자치단체장 등 보조금 지급주체가 보조금 지급업무를 효율적 운영을

위하여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함

라. 유가보조금, 천연가스 연료보조금,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(제21조의12, 제21조의13, 제21조의14 신설)

보조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없이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등에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4. 15. ~ 5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4 중 “법 제50조제4항”을 “법 제5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5 및 제21조의6을 각각 제21조의6 및 제21조의11로 하고,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5(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.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일 것
2.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
3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
4.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
5.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
6.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, 자동차등록번호,

구매 일시·장소, 구매량, 구매금액, 구매한 유류의 종류·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

7.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·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

8.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

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,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의6(중전의 제21조의5) 중 “법 제50조제5항”을 “법 제50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7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7(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.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천연가스일 것

2. 제21조의6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

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

3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
  4.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충전받을 것
  5.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연료를 구매할 것
  6. 천연가스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, 자동차등록번호, 구매 일시·장소, 구매량, 구매금액, 구매한 천연가스 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
  7.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·협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연료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
  8. 그 밖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
- ②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연료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연료를 충전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산정기준,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의8(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)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”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,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.

제21조의9(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.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일 것
2.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
3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
4.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수소를 직접 충전받을 것
5.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연료를 구매할 것
6. 수소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, 자동차등록번호, 구매 일시·장소, 구매량, 구매금액, 구매한 수소의 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
7.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·협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연료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
8. 그 밖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

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

- ②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연료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수소 연료보조금은 연료를 충전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산정기준,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의10(자료의 제공)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

1. 법 제24조 및 제8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
2.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 및 취소·정지에 관한 자료
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
4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
5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
6.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

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

제21조의11(중전의 제21조의6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0조제7항”을 “법 제50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12(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)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
2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
3.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의13(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) ①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

를 늘려 운행한 경우

2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

3.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의14(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) ① 법 제51조의4제1항 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

2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

3. 법 제50조제7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

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한다.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12의 개정 규정 시행 전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를 따른다.

제3조(천연가스의 지급정지 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13의 개정 규정 시행 전 천연가스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3을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의4(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) 법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”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,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1조의4(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) 법 제50조제5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1조의5(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일 것</li> <li>2.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3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</li> </ol>

4.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
  5.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
  6.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, 자동차 등록번호, 구매 일시·장소, 구매량, 구매금액, 구매한 유류의 종류·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
  7.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·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
  8.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
-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

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

3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

4.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천연가스를 직접 충전받을 것

5.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연료를 구매할 것

6. 천연가스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, 자동차등록번호, 구매 일시·장소, 구매량, 구매금액, 구매한 천연가스 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

7.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·협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연료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

8. 그 밖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

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

②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연료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연료를 충전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산정기준,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제21조의8(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)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”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,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.

<신 설>

제21조의9(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

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.

1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일 것

2. 제21조의8에 따른 운송사업자로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

3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

4.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수소를 직접 충전받을 것

5. 해당 여객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연료를 구매할 것

6. 수소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, 자동차 등록번호, 구매 일시·장소, 구매량, 구매금액, 구매한 수소의 단가 등이 실제 충전한

내용과 일치할 것

7.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·협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연료를 공급받은 자 또는 여객자동차가 아닐 것

8. 그 밖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

②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연료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수소 연료보조금은 연료를 충전받은 여객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산정기준,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의10(자료의 제공) 법 제50조제8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”란 다음

<신 설>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

1. 법 제24조 및 제8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자료

2.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 및 취소·정지에 관한 자료

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

4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

5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

6.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

제21조의6(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

제21조의11(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) ----- 법 제50조제9항-----

전공단(이하 “한국교통안전공단”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력 양성 교육·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12(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) ① 법 제51조의2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

2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

3.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

<신 설>

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1조의13(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) ①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

2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

3.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제21조의14(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) ① 법 제51조의4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

2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

3. 법 제50조제7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

② 법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한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을 정지한다.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24